

# '91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승인 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1.11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 안 이 유

- 도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'91 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여 도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## 2. 주 요 골 자

- 도유재산의 취득, 매각, 교환에 대한 계획 변경

### 가. 취득 및 처분재산의 표시

#### (1) 취 득 재 산

- 덕유초소 부지매입 (경찰청 소관)
  -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220-1 번지 1 필지 2,396  $m^2$
- 시설포도연구소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(진흥원 소관)
  -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93번지 외 12 필지 49,587  $m^2$
  -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위 토지 내 연구소 신축 1,500  $m^2$

#### (2) 매 각 재 산

- 구 덕산임야관리소 부지 및 건물매각
  - 제천군 덕산면 도전리 444-5 번지. 대지 998  $m^2$ , 건물 130.5  $m^2$

#### (3) 교 환 재 산

- 도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
  - 취득재산 : 청주시 용담동 201-9 번지 외 8 필지 8,595  $m^2$
  - 처분재산 : 청주시 개신동 산 115-7 번지 외 12 필지 10,174  $m^2$   
(구 종합사격장)  
청주시 개신동 산 115 - 7 번지 내 건물 605  $m^2$

## 나. 취득 및 처분의 사유

### (1) 취 득 재 산

- 덕유초소부지 매입
  - 초소개축으로 근무환경개선
  - 국가중요시설보호와 대청호불법წყ수단속
- 옥천 시설포도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
  -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기술개발

### (2) 매 각 재 산

- 구 덕산임야관리소 부지 및 건물
  - 덕산임야관리소 폐쇄로 관리소를 보존할 필요가 없고
  - 건물이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움

### (3) 교 환 재 산

- 도유재산(구 종합사격장부지 및 건물)과 국유(국가기관) 재산교환
  - 국가기관청사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

## 3. 제 안 근 거

- 지방재정법 제 77 조제 1 항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4 조제 1 항
-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 조 및 제 39 조
-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 29 조

## 4. ' 9 1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: 별첨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
## 6. 참 고 자 료 : 별첨



'9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 7 - 2 )

충청북도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지 목	재 산 표 시		추 정 가 액	취득시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
		소 재 지	수 량				
계	토 지	2	51.983	323,960			
	건 물	1	1.500	800,000			
1	대	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220-1	2.396	23,960	4/4	덕유 초소 개축 부지	구 입
2	전·답	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93외 12필지	49.587	300,000	4/4	시설포도연구소 설립	구 입
	건 물	"	1.500	800,000	4/4	"	신 축

'91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(7-3)

충청북도

(단위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		교환대상수량	추정가액	교환시기	교 환 사 유	교환대상자	비 고
	구 분	지 목	소 재 지	일단의 수량							
	취 득	과수원 전 " " 답 " " " " 전 도로 전	청주시 용담동 201-9	2.172	2.172	38,990	4 / 4	국 가 기 관			
			" " 윤천동 663-6	1.022	1.022	196,450	"				
			" " " 663-14	422	422	126,350	"				
			" " 을량동 322-4	516	516	21,840	"				
			" " 지북동 330-5	1,359	1,359	28,770	"				
			" " 평촌동 60-8	1,683	1,683	53,445	"				
			" " 정상동 368-12	793	793	25,200	"				
			" " 사직동 574-8	152	152	98,700	"				
			" " 개신동 1-3	476	476	144,200	"				
	처 분	임 야 " " 전 임 야 " " 답 " " 전 도로 " " " " " " " " 건 물	" " 개신동 산 115-7	694	694	48,580	"	국가기관 청사부지로 사용코자 교환	충청북도지사		
			" " " 산 115-6	496	496	34,720	"				
			" " " 488-4	2,985	2,985	208,950	"				
			" " " 산 117-2	595	595	41,650	"				
			" " " 산 115-5	298	298	20,860	"				
			" " " 488-7	380	380	26,600	"				
	" " " " " " " " " " " "	" " " 488-6	1,894	1,894	132,580	"					
		" " " 488-2	737	737	51,590	"					
		" " " 산 114-2	694	694	48,580	"					
		" " " 산 115-4	793	793	55,510	"					
		" " " 467-9	301	301	21,070	"					
		" " " 467-7	132	132	9,240	"					
		" " " 467-8	175	175	12,250	"					
		" " " 산 115	605	605	59,000	"					



'91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(7-4)

충청북도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매각대상수량	과표 또는 평가액	매각시기	매 각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
	지 목	소 재 지	일단의 수량					
계	토 지		998	998	56,886			
	건 물		130.5	130.5	2,154			
	대 지	제천군 덕산면 도전리 444-5	998	998	56,886	4 / 4	덕산임야관리소 폐쇄로	
	건 물	"	130.5	130.5	2,154	"	관리소를 보존할 필요 가 없고, 건물의 노후 로 유지관리가 어려움.	

관 계 법 령 발 행

地方財政法	지방재정법시행령
<p>第77條(公有財産의 管理計劃)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의 財産과 事業決定에 關한 年度 公有財産의 取得·管理 및 處分에 關한 計劃(이하 "管理計劃"이라 한다)을 制定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受하여야 한다.</p> <p>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管理計劃에 關한 公有財産을 取得·管理 또는 處分하여야 하며, 그 管理處分結果를 報告·分析하여야 한다.</p> <p>③ 第1項 및 第2項의 管理計劃과 處分結果는 大統領令이 發하는 日에 各 市·郡 및 自治區에 在하는 市·道知事에게, 市·道에 在하는 內務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 7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 조제 1 항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법 제 7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처분결과의 보고명령, 시책등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.</p>

공유재산관리조례	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 37 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 77 조 및 영 제 84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전년도 12월 31 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전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인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위법 제 7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어받은 채원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어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·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, 지목, 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임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의 협의하여야 한다.(개정 '88. 5.19)</p> <p>제 38 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)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·교환·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(개정 '88. 5.19)</p>	<p>제 89 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 조제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유재산관리계획(별지 제 15 호서식)</li> <li>2. 공유재산매매계약서(별지 제 16 호서식)</li> <li>3. 양어계약서(별지 제 17 호서식)</li> <li>4. 공유재산매수요구서(별지 제 18 호서식)</li> <li>5. 교환계약서(별지 제 19 호서식)(개정 '88. 5.27)</li> </ol>